

# 개인

##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신고

오수처리시설 등은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대상

구분		설치할 시설	
설치대상	하수처리 구역 밖	오수발생량 2㎡/일 초과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또는 4대강법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오수발생량이 1㎡/일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 구역 안	오수발생량 2㎡/일 이하 건축물	정화조
설치 제외 대상	하수처리 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정화조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		

· 오수처리시설 설치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설거지 물, 목욕용수 및 화장실의 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신축 및 증축 건물에 설치한다.

· 정화조 설치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화장실의 분뇨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신축 및 증축건물에 설치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요령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서 배출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폭기조 등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을 끄는 행위

※ 위반시 최고 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화조는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는 악취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수설비 [방류조 (放流槽) 또는 배수조 (排水槽)] 에 공기공급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개인

##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다음 시설은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고 결과를 3년동안 보관

-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50㎡/일 이상 200㎡/일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 내부청소

- 정화조 :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연 2회 이상)
-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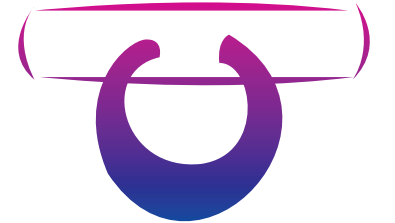
구분	1일 처리 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 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0 이하
			부유물질 (SS)	10 이하
		특정 지역 및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부유물질 (SS)	2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0 이하
			부유물질 (SS)	10 이하
총 질소 (T-N)			2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 구역 및 특정 지역	총 인 (T-P)	2 이하
			총 대장균 수 (개/㎖)	3,0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65 이상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00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50 이상

※ 다만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2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은 방류수 수질기준중 총 질소 60mg/L 이하, 총인은 8mg/L 이하로 적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 관리요령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사육시설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면적기준)은 시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후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축산법에 의해 축산업을 등록한 경우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를 설치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2년이하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축사면적이 돼지는 50㎡이상, 소는 100㎡ 이상일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정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또는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처리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주는 행위
- 액비를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한 액비 살포기준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여야 함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 및 주거시설과 100m이내 지역은 액비살포를 금지하고 있음.



##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처리시설은 매일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처리시설 관리일지는 매일 가동시간, 가축분뇨 배출량,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를 측정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처리시설은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여야 합니다.
- 자원화시설은 퇴비 또는 액체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퇴비화시설은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 대상

#### 허가대상

(기준 : 면적)

구분	일반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
돼지	1천㎡ 이상	500㎡이상
소	900㎡이상	450㎡이상
젖소	· 축사 900㎡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 축사 450㎡ 또는 운동장 1,350㎡ 이상
말	900㎡이상	450㎡이상
닭·오리·양		-
사슴		-
개		-

#### 신고대상

(기준 : 면적)

구분	일반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
돼지	50~1천㎡	50~500㎡
소	100~900㎡	100~450㎡
젖소	· 축사 100㎡~900㎡ · 운동장 300㎡~2,700㎡	· 축사 100㎡~450㎡ · 운동장 300㎡~1,350㎡
말	100~900㎡	100~450㎡
닭·오리·양		150㎡이상
사슴		500㎡이상
개		60㎡이상



사람과 自然의 아름다운 동행

맑고 건강한 **삼척**



▲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  
◀ 도계분뇨처리장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  
Tel. 033-570-3833 (3339)  
Fax. 033-570-3139